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1
----------	-----

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0월 30일, 성백진
- 나. 회부일자 : 2014년 10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중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직영하며 재정상·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로 이관하고
- 나.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민간위탁 추진 개요 및 경위

- 본 동의안은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운영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근로자 노무, 고충 등 상담지원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컴퓨터, 직업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및 문화체험·교류 지원
 -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²⁾,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³⁾에 따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2)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및 상담과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 본 동의안은, 서울시 관내 7개의 외국인근로자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구(성동구) 직영으로 운영하며 재정상·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로 이관하고, 이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임.
-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는 2001년 12월에 구립시설로서 전국 최초로 설치된 외국인근로자센터로서, 개원 당시 서울 최초의 센터로서의 역할이 컸으나, 이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발전됨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아졌으며, 성동구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의 어려움을 겪는 등 센터 발전에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현황 : 총 7개소〉

센터명	위 치	규모	예산 (백만원)	수탁기관	인력	개관일	비 고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52㎡	273	성동구 직영	5명	'01.12.14	단독시설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29	65㎡	145	하상복지회	2명	'07. 5. 1	가산종합사 회복지관 내
은 평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37㎡	139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2명	'08. 3.13	녹번종합사 회복지관 내
강 동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46㎡	153	대한사회복지개발원	2명	'08. 3.15	성내종합사 회복지관 내
양 천	양천구 신목로 16길 27	70㎡	142	평화복지재단	2명	'09. 4.28	신목종합사 회복지관 내
성 북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23㎡	134	진각복지재단	2명	'09. 4.30	월곡종합사 회복지관 내
서 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375㎡	321	(사)세계선린회	5명	'10. 5.30	단독시설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이들이 겪는 불편·부당한 문제를 해소하고 권익보호 및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하는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따라서, 상기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

무·법률·생활 상담 및 교육·취업지원 등으로,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기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 다만, 향후 상기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센터들의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법률 분야의 전문교육과 통역요원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로서의 전문성 및 정체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더욱이 그동안 7개소의 외국인근로자센터 가운데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왔던 바, 향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적격자심의 절차 등이 추진될 경우 이상의 사항을 유념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상기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이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중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직영하며 재정상·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로 이관하고
- 나.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 시설규모 : 453.7㎡(지하1층, 지상4층)
- 운영인력 : 5명 내외
- 공간구성 : 사무실, 강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1년 10월(2015. 3. 1 ~ 2016. 12. 31)

- 위탁사무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외국인근로자 노무, 고충 등 상담지원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컴퓨터, 직업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및 문화체험·교류 지원
 -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 소요예산 : 409,000천원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교육·취업지원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이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현 운영주체인 성동구와 센터 이관 합의 완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이동진(☎ 5078)